

의안 번호	5936
----------	------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

대구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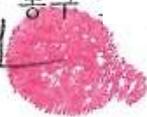
붙임)

- 1) 청원서
- 2) 청원 소개의견서

청원자 : 조광현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

서명날인 : 조광현



청원서

청원의 취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문화기반시설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관인 박물관의 진흥을 위해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박물관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사·문화적 아이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시설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역사·문화성 정체성과 대도시의 품격을 보여줄만한 시립종합박물관이 없는 대구광역시는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립박물관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 공립박물관 6곳 중 3곳(방짜유기박물관, 향토역사관, 근대역사관)이 성격이 다른 기관인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속으로 되어있고, 3곳(국채보상운동기념관,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대구섬유박물관)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박물관 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 박물관 건립 및 운영, 사립박물관 설립 지원 및 육성 등 박물관 진흥 정책을 시행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시장의 공약인 시립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 외에는 박물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고 부실하여 박물관 지원, 육성과 무관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박물관 진흥을 위해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를 별첨과 같이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 2016-04-11 조례 제 48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2. “관련법인·단체”는 「민법」·「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할 수 있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다목 중 “박물관 등록 등에”를 “박물관에”로 한다.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2. “관련법인·단체”란 「민법」·「상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이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 방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지역 문화자원으로서 가치 증진
2.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
3. 시민의 문화 향유능력 신장
4. 지역사회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공공성 증진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이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향상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

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해 5년 단위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제7조(경비 지원)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에 필요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지원기준)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장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 완성도
3. 연구업적 및 활용능력
4.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의2(지원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 휴관하였을 때. 다만, 휴관은 총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제8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제9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

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의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사업자에는 환수한 날부터 2년간은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유희공간 활용) ① 시장은 시 소유의 유희 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희공간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위원회 설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7조에 따른 경비 보조
3. 제8조의2에 따른 지원의 해지
4.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5. 법 제18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타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1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청원 소개 의견서

청원건명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		
청원인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성명	조광현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이영애 		
소개년월일	2022년 3월 2일		
소개의견	회상조례에 필연성에 동의함.		